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7.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내”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로 확대 (안 제3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

■ 서울시 자치구 보조 기준액 현황(별지 참조)

- 자치구세 3%범위 내 : 종로구
- 일반회계 예산 2%범위 내 : 송파구
- 자치구세 5%범위 내 :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광진구

- 자치구세+세외수입 3%범위 내 : 용산, 동작구, 양천구
- 자치구세+세외수입 4%범위 내 : 은평구
- 자치구세+세외수입 5%범위 내 : 12개구
 -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 자치구세+세외수입 7%범위 내 : 금천구
- 자치구세+세외수입 8%범위 내 : 중랑구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 구로구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용 중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교육환경 선진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기준액의 범위 등 확대 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구 보조기준액 지원 사례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교육경비

지원시 학교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폭넓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3.

보고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현황(타구사례)

(2009. 6. 11현재)

연번	자치구명	보조기준액
1	종로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중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 범위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을 마련하는 경우 2. 국·시비 보조금의 부담 경비를 미부담하는 경우 3.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용산구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3% 범위 내 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4	성동구	제2조(보조금재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범위내 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2008.12.29)
5	광진구	제4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범위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로(구비 부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
6	동대문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중랑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그 총액의 8퍼센트 범위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15><개정 2007.10.30><개정 2008.12.09>
8	성북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5.30, 개정 2007.10.22, 2008. 10. 30)
9	강북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 외 5%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0	도봉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퍼센트 범위 안 에서 관할구역 안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11	노원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타 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5)
12	은평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4%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비·시비 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4%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3	서대문구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8.12)
14	마포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0.5)
15	영등포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5, 2006.03.09, 2007.09.27)
16	양천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로 한다.
17	강서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
18	구로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10.5) 1.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마련하는 경우 (신설 2007. 10.5) 2.국·시비 보조금의 부담 경비를 미부담하는 경우 (신설 2007. 10.5) 3.당해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07. 10.5)
19	금천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안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04.18)
20	동작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3.11.15, 2007.9.27, 2009.5.11)
21	관악구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22	서 초 구	제2조(보조기준의 제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이내에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28, 2009. 04. 09)
23	강 남 구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4	송 파 구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5	강 동 구	제3조(보조기준액 등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세 예산액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 3조 규정에 해당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